



제 418회 국회 (임시회)
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<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농어업인 명시>
■ 김선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3139호)

2024. 11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건오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농어업인 명시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김선교의원 등 10인

나. 발의연월일 : 2024. 8. 23.

다. 회부연월일 : 2024. 8. 26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,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,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, 복지,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,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농어업인 명시

가. 개정안 요지

-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¹⁾ 따른 농어업인등을 명시함(안 제50조제2항).

나.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	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	② ----- ----- ----- -----

1)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농어업인등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**농업인**과 농촌 주민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**어업인**과 **어촌주민**을 말한다.

①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**농업인**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②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**어업인**”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현행	개정안
부를 부담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(생략) ③·④ (생략)	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 <u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</u> 」 제3조제3호에 따른 <u>농어업인등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
다. 검토사항

-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“정보격차해소교육”이라 함)을 시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, 수급자, 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

<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>

근거 법령	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0조제2항 ²⁾	- 장애인 - 수급자 - 북한이탈주민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 ³⁾	- 보호대상아동 - 고령자 - 결혼이민자등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 - 농어업인등

- 2)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이 조에서 “정보격차해소교육”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4.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3)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46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)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3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
 4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② (생략)
-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.

○ 한편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「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」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다음과 같음.

- 일반국민(100%) 대비 6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종합 수준은 고령층이 70.7%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농어민이 79.5%로 낮게 나타났음. 디지털정보화 접근·역량 및 활용 수준 또한 고령층 및 농어민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.

<2023년도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>

(단위: %)

구 분	종합 수준	접근 수준	역량 수준	활용 수준
장애인	82.8	98.0	75.6	82.5
고령층	70.7	95.3	55.3	73.8
저소득층	96.1	99.6	93.0	97.4
농어민	79.5	97.0	71.0	79.2
북한이탈주민	92.7	99.1	85.0	97.1
결혼이민자	93.1	99.6	89.4	93.5

- 주: 1.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대비수준을 나타냄.
 2. 접근 수준은 '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'와 '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' 2개 항목임.
 3. 역량 수준은 'PC 이용 능력'과 '모바일기기 이용 능력' 2개 항목임.
 4. 활용 수준은 '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', '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', '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' 3개 항목임.

자료: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, 2024. 1.

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
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5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
6.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

- 이와 같이 일반국민 대비 낮게 나타나는 농어업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업인 또한 차별·배제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농어업인을 상향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.
-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3건의 「디지털포용법안」이⁴⁾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.

4) ① 「**디지털포용법안**」(의안번호 제2200551호, 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제12조(디지털역량 함양 활동)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 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4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② 「**디지털포용 증진법안**」(의안번호 제2202792호, 박민규의원 대표발의)

제13조(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)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4.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에 포함된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③ 「**디지털포용법안**」(의안번호 제2204377호, 김장겸의원 대표발의)

제14조((디지털역량 함양 활동)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- 제정안은 현행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의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관하여 보완·확대하면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포괄하는 ‘디지털역량 함양활동 및 교육시행’을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「디지털포용법안」 심사 시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○ 또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‘고령자’를 명시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1206호, 김선교의원 대표발의)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「디지털포용법안」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228

-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 3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 4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